

<p>金 成 春 ○ 專 門 委 員 金 南 中 ○ 出 席 公 務 員 交通管理室</p> <table border="0"> <tr><td>室</td><td>長</td><td>李 浩 助</td></tr> <tr><td>버스改善企劃團</td><td>長</td><td>金 禹 爽</td></tr> <tr><td>交 通 企 劃 官</td><td></td><td>金 相 敦</td></tr> <tr><td>大 衆 交 通 1 課 長</td><td></td><td>朴 喜 秀</td></tr> <tr><td>大 衆 交 通 2 課 長</td><td></td><td>羅 松 柱</td></tr> <tr><td>交 通 運 營 課 長</td><td></td><td>權 赫 昭</td></tr> <tr><td>駐 車 計 劃 課 長</td><td></td><td>尹 準 炳</td></tr> </table>	室	長	李 浩 助	버스改善企劃團	長	金 禹 爽	交 通 企 劃 官		金 相 敦	大 衆 交 通 1 課 長		朴 喜 秀	大 衆 交 通 2 課 長		羅 松 柱	交 通 運 營 課 長		權 赫 昭	駐 車 計 劃 課 長		尹 準 炳	<p>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차고지 및 부대시설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운송사업의 건설한 운영과 서비스개선 등의 능력을 갖춘 법인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판단여부는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p>
室	長	李 浩 助																				
버스改善企劃團	長	金 禹 爽																				
交 通 企 劃 官		金 相 敦																				
大 衆 交 通 1 課 長		朴 喜 秀																				
大 衆 交 通 2 課 長		羅 松 柱																				
交 通 運 營 課 長		權 赫 昭																				
駐 車 計 劃 課 長		尹 準 炳																				
<p>書 面 答 辯 書</p>																						
<p>【交通管理室】 ○李允中委員</p>																						
<p>(質疑要旨)</p>																						
<p>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제도(마을버스) 운영지침 제4조(면허기준)제2항1호에 의하면 “관할구청장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선 운행대수 등을 정한 후 당해 노선에 <u>연고가 있는</u> 일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참여의사를 물어 참여의사의 표시가 있을 경우 당해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참여의사가 없거나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되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 <u>건설한 법인</u>에게만 면허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위 규정 중 밑줄친 부분의 연고범위와 건설한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 바람.</p>																						
<p>(答 辯)</p>																						
<p><input type="checkbox"/> “당해 노선에 연고가 있는”이라 함은 신설되는 노선 운행구간에 시내버스나 여타 대중교통 수단과의 경합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여부를 마을버스 면허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주변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고권의 인정유무를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건설한 법인”이라 함은 자동차운송사업을</p>																						